

# 돼지 이동증명 시행지침(안)

◆ 본 고는 본회가 추진중인 '돼지 이동증명 시행 지침(안)'입니다. 세부내역 및 일정은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대한양돈협회 -

##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돼지 소유자, 위탁관리자, 돼지유통업자가 돼지이동에 대한 증명을 함으로써 돼지이동경로 파악 및 돼지주요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정 의)

- ① 돼지이동 : 돼지가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 ② 돼지소유자 :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주를 말한다.
- ③ 돼지유통업자 : 돼지를 매입하여 타농장에 판매하거나 도축을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 ④ 위탁관리자 : 돼지 소유자로부터 돼지사육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⑤ 돼지수송자 : 돼지를 이동시키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돼지인수자 :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이동된 돼지를 인수한 돼지소유자, 위탁관리자, 돼지유통업자 또는 도축장영업자를 말한다.
- ⑦ 돼지이동증명 : 돼지소유자, 위탁관리자, 돼지유통업자가 돼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지침운영 주체)

이 지침의 운영주체는 (사)대한양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된다.

## 제4조 (돼지이동증명서 발행)

① 돼지를 이동하고자 하는 돼지소유자, 위탁관리자, 돼지 유통업자는 (별첨 1) 양식의 돼지이동증명서를 돼지 수송 단위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돼지이동증명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돼지를 이동시키는 돼지수송자 또는 돼지유통업자에게 발행하여야 하고, 나머지 1부는 발행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돼지유통업자는 돼지이

시 돼지이동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돼지 인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6조 (돼지이동증명서 접수)

① 돼지인수자는 제 4조 규정에 따른 돼지이동증명서를 접수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영업자는 돼지이동증명서를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돼지인수자는 돼지인수 시 돼지이동증명서가 없을 경

우 제4조  
규정에  
따른 돼  
지이동증  
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돼지이동증명서 제출을 발행자 또는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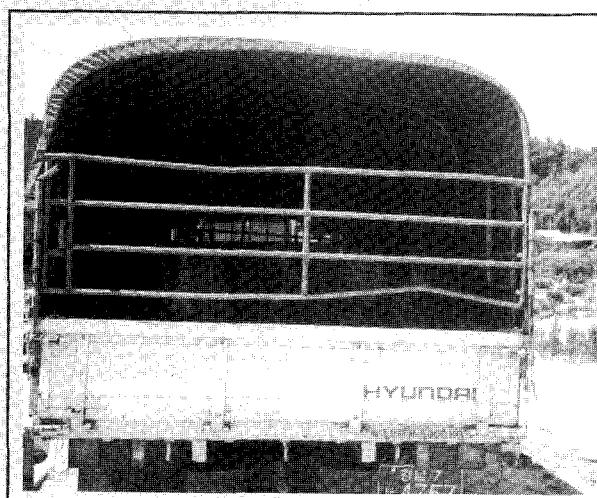
② 1항에 의거 돼지이동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돼지유통업자 간담회 및 교육)

① 협회는 이 지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돼지유통업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돼지유통업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간담회 및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는 간담회 및 교육에 참석한 돼지유통업자에게 교육 이수



동증명서에 모든 원산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 (돼지이동증명서 휴대 및 전달의무)

돼지수송자, 돼지소유자, 또는 돼지유통업자는 돼지이동

야 한다.

**돼지를 이동하는 돼지수송자는 돼지이동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동목적지에 농장주 또는 도축장 영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7조 (돼지이동증명서 활용)

① 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돼지주요전염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관계기관 협조)

① 협회는 이 지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 장간 23주년 / 새로운 가축방역체계 구축방안 모색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국양돈조합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농림부, 시, 도 등 관계기관에 이 지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 (예산)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예산은 협회 예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 제11조 ((사)대한양돈협회의 임무와 역할)

협회는 이 지침 운영에 필요한 지도, 홍보,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 서면경고

2차 위반시 : 협회정보지 또는 인터넷에 명단공개  
부칙 : 이 지침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양돈



## 제12조 (벌칙)

협회는 제4조, 제5조, 제6조

<별첨 1> 돼지이동증명서 양식

발행자 본인은 돼지이동증명시행지침 제4조, 6조 규정에 의거 아래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

①발행일시	②발행자명	
③발행자 연락처	④농장고유번호	
⑤발행자 주소	⑥이동두수	자돈 (      두 ) 비육돈 (      두 ) 후보돈 (      두 ) 기타                 두 계                     두
⑦임상증상 및 특이사항		
⑧돼지유통 업자명		
⑨돼지수송자명	⑩수송차량번호	
	⑪수송자연락처	
⑫발행자 서명		

돼지인수자 본인은 돼지이동증명 시행지침 제6조에 의거 돼지이동 확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⑬인수일시	⑭인수처
⑮인수자서명	